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



http://www.daedeok.go.kr

제2022-86호 2022. 12. 9.(금)

차 례

고 시(1)

•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(고시 제2022-102호) -----1

공 람

발행: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: 기획홍보실(우: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☎ 608-6602)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-102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9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O 도로명주소 부여

지 번 주 소	도 로 명 주 소	부여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	도로명 부여시유 (도로명 고시일)
신탄진동 142-16	신탄진로796번길 19	2022. 12. 9.	건물신축	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,9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신탄진동 142-18	신탄진로796번길 17	2022. 12. 9.	건물신축	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,9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(☎ 042-608-5305)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http://www.juso.go.kr)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❖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 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 끝.